[재공고] 우리은행 국외지점 아시아, 다카ROC 인프라 용량 증설 (아크테라 이중화솔루션 부문)

등록일

2025.05.07

조회

14

-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,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- 우리은행 IT기획부 차장 박덕우(02-2002-3202)
 - ※ 변동사항 발생 시 E-mail을 통해 공지 예정
-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 - ㅇ 사 업 명: "우리은행 국외지점 아시아, 다카ROC 인프라 용량 증설"
 - ㅇ 제품사양 : 붙임1. 도입요건 참조
 - 도입요건과 상이한 견적(사양)제출 시, 변경항목 및 해당사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
(미제출 시, 공고된 도입요건을 따름)

- 입찰방법: 제한경쟁입찰(최저가, 비공개 투찰 방식)
- 1-1. 입찰참가자격
 - ㅇ 지방세,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
 - ㅇ 우리은행 및 우리에프아이에스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
 - ㅇ 공고일 기준 제조사(붙임 참조) 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
 - ㅇ 제조사(붙임 참조)의 물품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확약 공문 제출 가능 사업자
- 1-2. 낙찰자 결정방법
 - 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함 (유찰 시 제15조에 의함)
- 2. 주요 공지사항
- 2-1. 주요일정
 - o 입찰 공고기간: 2025. 05. 07. ~ 2025. 05. 15
 - ㅇ 참여자격 결과 통지(예정): 2025. 05. 15
 - ㅇ 입찰일시: 2025. 05. 19 예정
 - o 결과통지 및 입찰: IT전자입찰시스템(https://epro.wooribank.com/index_ict.jsp)
- 2-2. 입찰에 관한 사항
-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
- 3. 입찰관련 서류 제출일시 등에 관한 사항
 - ㅇ 제출일시 : 2025. 05. 15. 11:00까지
 - ㅇ 제출서류
 - 입찰참가 신청공문(업체 양식)
 - 납품실적 증명원
 - (기존 당행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계약서 확인으로 갈음함)
 - 제조사 물품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확약 공문
 - 견적서(무상기간 및 유지보수 요율 기입, 직인 날인본)
 -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

- o 제출방법: 우리은행 IT전자입찰시스템 등록 및 당행 방문 제출
 - IT전자입찰시스템(https://epro.wooribank.com/index_ict.jsp) 입찰참가신청
 - 방문처: 서울시 중구 소공로48(회현동2가)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9층
- o 업체 등록: https://epro.wooribank.com/index_ict.jsp
 - 입찰에 참가할 신규 업체의 경우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회원등록 바람
 - 기존 등록 회사의 경우 회원정보 변동여부(영업담당 연락처 등) 확인바람

4. 입찰보증금

- o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
 - 1. 관공서·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
 - 2. 당행 또는 행우회에서 50%이상 출자한 법인
- 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,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어촌계,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와 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산림조합 및 중앙회(舊 산림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계를 포함한다.)
 - 4.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경우
- o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(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, 5년 TCO입찰의 경우 유상유지보수 금액을 포함한 금액)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함
- o 입찰보증금은 현금(체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
 - 1.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
 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
 - 3. 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
- 4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건설공제조합,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의한 신용보증기금,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한 기술보증기금, 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,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「산업발전법」에 의한 공제조합,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,「전력기술관리법」에 의한 전력기술인 단체 또는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
 - 5.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
- o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,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ㅇ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60일 이후이어야 함
- 5.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
 - ㅇ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입찰유의서 제5조에 의거 당행에 귀속됨
- 6.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 -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
 - 1.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
 - 2.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
 - 3.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
 - 4.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
 - 5.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

- ㅇ 본 건 계약 관련 사항은 당행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입찰유의서에 따름
- ㅇ 본 건 입찰요건 및 추진내용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ㅇ 본 건 유지보수 계약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름
- ㅇ 본 건 관련 이의신청접수는 공고기한 내 접수 건에 한함

(붙임) 1. 도입요건 1부.

- 2. 입찰참가신청서(일반) 1부.
- 3. 입찰참가신청서(소액) 1부. 끝.